

누구를 위해 언론은 보도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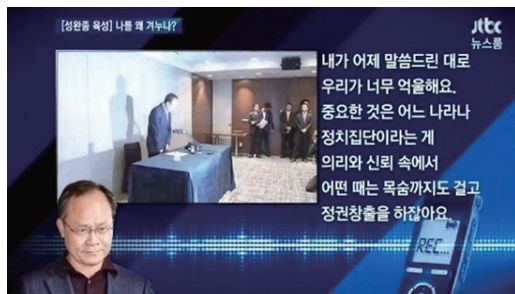
언론 윤리와 JTBC 성완중 인터뷰 녹음파일 방송 논란



양재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팀장

JTBC에 쏟아진 비판

생각했던 것보다 관련 기사가 많지 않았다. 다름 아니라, 지난 4월 15일 방송된 JTBC의 고 성완중 경남기업 회장 인터뷰 녹음파일 보도 논란, 줄여서 'JTBC 녹음파일 방송'을 두고 하는 말이다.



JTBC의 고 성완중 회장
인터뷰 녹음파일 보도화면
(출처 : 『JTBC』 〈뉴스룸〉,
2015년 4월 15일자)

일부 매체에서 비중 있게 다루긴 했다. 우리나라 기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한국기자협회에서 발간하는 기자협회보가 관련 기사 8건을 냈고, 미디어 비평을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오늘 역시 같은 수의 기사로 이번 사건을 다뤘다. 물론, 가장 많은 수의 기사를 낸 것은 직접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경향신문이다. 경향신문은 아래의 기사를 포함한 총 10건의 기사에서 JTBC와 손석희 사장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취재윤리? 어겼다. 남의 것을 훔치고 가로채면 안 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논하기 위해 언론학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다. 보도의 공익성, 다시 말해 JTBC의 7시간 전 육성 보도로 새롭게 얻게 되는 진실은? 아무리 봐도, 없다.

(4월 24일자 『경향신문』 내가 알던 손석희 맞나?)

비단 경향신문 기사가 아니더라도 관련 기사들의 논조는 대체로 JTBC 보도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비판적이었다. 이런 면에서 4월 23일자 미디어오늘에 실린 박중언 한겨레신문 디지털에디터의 “손석희를 위한 변명… 욕먹더라도 공개하는 게 맞았다” 제하의 기고는 이례적으로 JTBC 보도에 긍정적이었다.

언론 본연의 책무가 국민들이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도록 돕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손석희에 대해 일방적으로 돌을 던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언론사 간 도의를 훼손한 부도덕한 행위이지만, 공익 측면에선 음성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욕심을 줄이고 경향신문의 전문 공개 이후에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라면 하는 것이 사후에 얻는 교훈이 아닐까 싶다.

(4월 23일자 『미디어오늘』 손석희를 위한 변명… 욕먹더라도 공개하는 게 맞았다)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경향신문 이들 세 개 매체 외에도 관련 기사를 낸 언론사들은 더 있다. 독특한 관점의 기사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 논란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경향신문과 JTBC의 입장을 중개하는 수준이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언론들에게 이 문제는 처음부터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한편, 다소 의외라고 여겨지는 상황도 연출되었다. 녹음파일 방송 이후 JTBC와는 척을 지고 법적 대응에까지 나설 것 같았던 성 회장 측 유족은 JTBC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인터뷰는 5월 19일 JTBC 뉴스 시간에 방송되었다.¹⁾ JTBC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JTBC를 상대로 예고되었던 소송이나 고소 또한 아직 제기되지 않고 있다.

문제의 4월 15일자 방송 직후에는 온통 JTBC와 손석희 사장을 성토했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는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일까. 시간이 약이라고 그 사이 상처가 아물 듯 자연적인 치유가 이뤄진 것인지, 언론에서 다뤄야 할 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에 파묻힌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별문제가 아니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을 비판했나?

JTBC 녹음파일 방송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바로 법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이다. 법적 관점부터 살펴보자.

이번 사안은 명예훼손, 음성권 침해와 같은 전형적인 언론분쟁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임을 전제로 JTBC가 이번 녹음파일 방송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첫째, 성 회장은 공인으로서 인격권 분쟁에 있어서는 사인과 다르게 취급된다. 보통 육성 공개에 있어서는 인격권의 일종인 ‘음성권’ 침해가 문제된다. 또, 유족 입장에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감정’ 또는 ‘명예감정’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권리 침해 주장 모두 설득력이 크지 않다. 성 회장이 ‘공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까지 국회의원이었고, 검찰의 수사 대상인 기업의 대표로서 이 사건 보도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다수 언론보도에서 성 회장을 단순히 건설사 대표로서만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다행히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성 회장을 ‘전 국회의원’이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성 회장의 공인성을 보다 명백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 행태라고 생각한다.

1) 성 회장의 장남 성승훈 씨가 JTBC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JTBC, 2015. 5. 19. 박영우, “[인터뷰] 성완중 장남 “반기상 부자, 의혹 제기하면 반 총장 언급””,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91976(검색일: 2015. 5. 20.)].

공인은 일반인과 달리 인격권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육성 그대로 공개되었다고 해서 음성권 침해가 성립될 여지는 희박하다. 이것은 현재 다수의 언론에서 성 회장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에 자주 사용하는 것과도 통한다. 고인의 초상 사용이 이처럼 폭넓게 가능한 것은 당사자가 일반인이 아닌, 공인이기 때문이다. 성 회장의 공인성은 인격권 침해 판단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할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공인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사안에서는 당사자의 공개 의사도 고려되어야 한다. 성 회장은 자신의 주장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했다. 물론, 이 공개 동의 의사에 ‘육성’ 그대로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되는지는 다소 불확실하다. 또, 경향신문이 아닌 다른 언론사에 의한 공개까지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전후 맥락을 놓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어쨌거나,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공개되기를 원했고 이것은 공인성 여부와 더불어 공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족의 공개 반대는 이 사안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 없다. 관련 규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²⁾)에 따르면, 고인의 인격적 처분과 관련한 동의는 유족 전원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생전에 당사자의 공개에 관한 확고한 의지 내지는 의사가 있었다. 유족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나 인격권 주체인 고인의 확고한 의사가 있는 경우, 그에 어긋나는 유족의 의사나 결정은 부차적인 사항이 된다.

고인의 육성 공개에 따른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감정, 명예감정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초상마저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성 공개에 따른 추모감정, 명예감정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셋째, 이번 사안은 그 자체로 매우 공공성이 큰, 공적 관심사다. 수사가 진행 중인, 현재진행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나 이전 정부의 도덕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③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의 유족 전원이 하여야 한다.

성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대화 내용이 공개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화 내용 이외에 육성 그 대로를 공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적 가치(현장감, 사실성, 절박감, 당사자의 진정성 및 이 모든 것을 통해 전달되는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도 있을 것이다.

넷째, 방송 매체의 특성상 대화 내용 이외에 음성 파일 공개 또한 필요했을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 육성 그대로를 내보낸 것을 탓한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방송에서의 수많은 대화 음성 공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과거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비실명 요약보도’로 충분함에도 ‘실명 육성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영광 편집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상황이 종료된 지 무려 7~8년이 경과된 후 보도되었고 이러한 시간적 간극을 이유로 법원은 실명 육성보도를 내보낼 만큼의 ‘비상한 공적 관심사’는 아니라고 보았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안은 과거 ‘안기부 X파일’ 때와는 다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고 당사자가 죽음으로써 호소한 만큼 실제적 진실의 규명이 절실하기에 사건의 추이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JTBC의 적극적인 보도를 문제삼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녹음파일의 입수 경위에도 법적인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녹음파일의 사본을 넘긴 행위 자체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나 ‘공용서류 등의 무효’(제141조)에 해당될 가능성도 없으며 녹음파일을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파일의 복사본을 제3자를 통해 취득한 것을 절도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여섯째, 보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높지 않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번 사안은 내용상 매우 공공성이 강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서 성 회장 개인의 동의 의사에서만 공개의 정당성 근거를 찾을 필요는 없다. 만일 현 정부 실세들에 대한 로비 내용이 담긴 제3의 인물과의 대화 내용을 다른 언론에서 입수했다고 할 경우, 과연 누가 당사자의 동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않겠는가? 그건 기대가능성이 희박한 가정이다. 이런 점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공공재’라고 표현한 JTBC의 입장은 사안의 공공성 및 이를 뒷받침해주는 핵심적인 자료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사적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미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이 지났고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 또한 취해진 바 없다. 그러므로 JTBC의 법적 책임 유무를 두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윤리적 관점이다. JTBC 음성파일 방송 논란에서 무엇인가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윤리적 관점이 보다 적합하다고 본다. 언론에서도 이번 논란을 주로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윤리적 관점에서 논의된 JTBC 녹음파일 방송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개 단어, 즉 ‘도용’, ‘부동의’, ‘이중잣대’, ‘시청률’ 그리고 ‘속보경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도용’부터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경향신문은 손석희 사장에게 묻고 싶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 파일을 훔쳐 방송하는 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가.

(4월 21일자 「경향신문」 JTBC의 '언론윤리 훼손'에 대한 경향신문 기자들의 입장)

‘도용’은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법률용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형법상 ‘절도’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JTBC의 보도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규정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JTBC의 녹음파일 방송을 ‘절도’, ‘도둑질’, ‘날치기’, ‘가로채기’ 등으로 보는 시각은 여러 건의 기사에서 폭넓게 발견되는데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는 해당 녹음파일이 JTBC의 것이 아닌, 경향신문의 것이라는 관념이 있겠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취재도 노동의 결과인 만큼 타인의 결실을 익명으로 가져오는 것은 ‘노동 착취’행위”라면서 “대부분 조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 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취하는 행태가 도드라진다. 저널리즘의 실천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속도 경쟁의 산물이며, 국민의 알 권리나 진실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4월 22일자 「기자협회보」 베껴쓰기 등 취재윤리 위반 도 넘어)

다음으로, JTBC 보도가 맹비판을 받게 된 배경에는 고 성완중 회장의 유족 측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관련 기사에서는 ‘무단 공개’,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중단 요청’, ‘유족의 반대’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고 실제로 JTBC의 녹음파일 방송에 유족 측의 동의는 없었다.

성 전 의원의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성 전 의원의 장남 승훈씨는 JTBC보도국에 전화를 걸어 “고인의 육성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고, 박래웅 경향신문 편집국장도 방송 직전 오병상 JTBC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족들이 녹음파일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방영 중단을 요구했다.

(4월 15일자 『미디어오늘』 JTBC 성완중 녹취 공개에 경향신문 “법적대응할 것”)

유족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 JTBC에 대한 윤리적 비판은 ‘이중잣대’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JTBC가 빛났던 것은 끊임없이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을 지켜온 성실함과 진정성 때문이었다. 참사의 아픔을 “경쟁하듯 보도”하는 “언론의 속성”으로부터 JTBC는 자유롭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손석희 사장과 JTBC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4월 21일자 『기자협회보』 ‘신뢰의 손석희’ 변명 뒤에 숨다)

세월호 피해자 유족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던 JTBC가 이번에는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³⁾

또 이번 JTBC 녹음파일 방송이 다소 무리였음을 전제로 그 원인을 ‘시청률’과 ‘속보경쟁’에서 찾는 견해도 우세했다.

3) 이러한 비판이 정당하려면 세월호 유족과 성 회장의 유족을 동일선상에 놓아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두 부류의 유족이 다르다는 것은 굳이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성 회장은 공인이고 세월호 희생자는 일반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중잣대 논란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본다.

반응은 냉담했다. 결국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무리한 속보 경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17일 사설을 통해 “무분별한 속보 경쟁이거나 특종을 가로채기 위한 무리수일 뿐”이라고 일갈했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지나친 시청률 경쟁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4월 21일자 『기자협회보』 ‘신뢰의 손석희’ 변명 뒤에 숨다)

녹음파일 방송이 나갔던 4월 15일 뉴스룸 2부 시간대 JTBC 시청률은 전날(2.65%)에 비해 크게 오른 4.29%를 찍었다고 한다. 또, 다음 날 아침 경향신문에 녹취록 전문이 실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JTBC가 급히 방송을 내느라 자막에 오타가 많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JTBC의 15일자 녹음파일 공개는 매우 다급해보였다. 자막에 오타가 많았다. 손석희 사장은 방송에서 “굉장히 늦게 이 자료를 입수해 급하게 제작해서 한두 군데 오타가 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해를 좀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4월 17일자 『미디어오늘』 JTBC, 성완종 경향 인터뷰 이유 생각해봤을까)

윤리적 비판은 타당했을까?

지금까지 JTBC에 쏟아진 비판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과연 이러한 비판들은 타당했나? 사실 이러한 윤리적 비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 판단은 그래도 법 규정이라든가, 판례와 같이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윤리적 판단과 관련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언론 윤리라는 것을 아예 부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다음의 문장이 윤리적 판단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리적 결정의 핵심은 자신의 충성 대상이 무엇이며 그것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조사이어 로이스(Josiah Royce)는 ‘충성심’(Loyalty)을 유일한 윤리적 원칙으로 보았다. 물론, 이러한 로이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목적과 주장에 대한 충성까지 용납하게 될 수 있으며 상충하는 충성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⁴⁾ 그러나 윤리적 결정의 핵심을 충성심으로 본 로이스의 견해는 윤리적 판단에 대한 나름의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한다.



충성심을 윤리적 원칙으로
삼은 조사이어 로이스
(출처 : 위키피디아)

윤리적 비판은 충성심, 곧 충성할 대상에 대한 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충성할 대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충돌하는 의무들 사이에서 균형있는 적절한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비판이 가해지는 것이다.

다시 JTBC 사례로 돌아가 살펴보자. JTBC의 녹음파일 방송에 대해 가해졌던 윤리적 비판은 충성 대상에 따라 재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서의 충성 대상은 경쟁사, 취재원, 그리고 언론사 사주다.

먼저, JTBC에 가해진 ‘도용’ 비판은 경쟁사이자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동의’, ‘이중잣대’ 비판은 언론이 취재원에 대해 갖는 윤리적 의무와 연관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청률’, ‘속보 경쟁’은 언론사 사주에 대한 충성 문제다. 이렇게만 보면 JTBC는 경쟁사나 취재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사주에 대해서만 충성한 셈이 된다. 윤리적 결정의 핵심을 충성심으로 파악했던 로이스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기삿거

4) Patterson, P. and L. Wilkins, 2013, 『미디어 윤리의 이론과 실제』, 장하용 역(한울아카데미), 142쪽.

리를 얻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언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⁵⁾

그런데 이 지점에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과연 언론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경쟁사나 취재원, 사주가 전부일까? 누구를 위해 언론은 보도를 하는가? 중요한 충성의 대상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 바로 독자 내지는 시청자에 대한 언론의 충성의무 말이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JTBC에 대해 쏟아졌던 윤리적 비판에서 독자나 시청자에 대한 언론의 충성의무는 뒷전이 아니었나 싶다.

이쯤에서 각자 자신을 틀 지우고 있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직업윤리를 점검해 보자. 가장 강하게 반영된 항목은 어느 것인지 그리고 사적인 이익과 미래의 보장을 위해 유보해버린 항목은 어느 것인지 생각해 보자.

(5월 6일자 「기자협회보」 저널리스트와 직업윤리)

이 칼럼을 쓴 변상욱 CBS 콘텐츠본부장은 기자의 직업적 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기자 개인의 양심이다. 둘째는 주된 독자층 혹은 시청자이며, 셋째는 소속 언론사, 넷째는 동료, 다섯째는 사회에 대한 공적 책무다. 이 모든 요소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기자는 세상에 존재할 것 같지 않다. 충성해야 할 대상은 여럿이고 충성의 방향은 엇갈리고 충돌한다. 결국, 선택의 문제가 남는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여기서 언론인 각자가 취하고 있는 윤리적 기준이 적용·발휘된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언론인들에게 의무가 상충하는 지점에서 일반 독자나 시청자보다는 소수의 유력 취재원에 대한 충성 의무가, 또 사회에 대한 공적 책무보다는 동료 집단에 대한 책무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

지난 2월 한 종편 프로그램 앵커는 방송 진행 도중 타사 기자에 대해 ‘쓰레기’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후보가 사석에서 기자들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모 기자가 정치권에 넘겼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이 기자의 행동을 문제시한 것은 비난

5) Patterson, P. and L. Wilkins(2013), 140쪽.

종편 앵커만은 아니었다. 당시 많은 언론보도에서 한국일보 기자의 행동을 두고 언론 윤리 위반 혹은 실정법 위반 등을 거론했다. 심지어, 해당 기자가 소속된 신문사는 “취재윤리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파일을 제공했다.”며 사과문까지 냈다.⁶⁾ 언론의 이런 식의 반응을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 기자들에 대한 고급 취재원들의 경계심이 강해져서 당장 취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목전의 불의한 현실만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이 기자 일반에 가져올 장기적인 파장을 고려하지 못한 ‘동료’ 기자의 선부른 행동에 부아가 치밀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녹음파일을 정치권에 넘긴 해당 기자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을 통해 녹음파일을 전달받은 KBS는 특종을 냈고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까지 받았다.⁷⁾ 녹음파일을 정치권에 넘긴 기자의 행동은 동료 기자나 소속 언론사에 대한 충성의무는 저버린 것일 수 있지만 독자나 시청자, 나아가 사회에 대한 언론의 충성의무에는 부합하는 것이었다. 기자로서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은 취재원과의 신뢰 위반이 아니라 독자나 시청자, 나아가 알 권리의 주체인 국민과의 신뢰 위반이 아닐까.⁸⁾

흔히 기자들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위해 몰래카메라나 불법도청과 같은 다소 무리한 수단과 방법까지도 동원하곤 한다. 위법하거나 비윤리적일 수 있음에도 이런 보도에 대해 윤리적 비판은 가하지 않으며 심지어 불가피한 취재기법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또, 취재원이 내건 오프더레코드, 엠바고 요청을 깨기도 한다. 단지 상업적 동기 때문이 아니라 독자나 시청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 경우 역시 비판거리가 아니다. 이러한 태도의 근저에는 기자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취재원이거나 동료 기자가 아니라 일반 독자나 시청자로 대변되는 사회에 대한 공적 책무라는 의식이 깔려있다.

6) 『한국일보』, 2015. 2. 10. 1면, “이완구 총리후보 녹취록 공개파문 관련 본보 입장”

7) 『기자협회보』, 2015. 3. 24. 강아영, “이완구 총리 후보자, 언론 외압 발언 보도” 등 4편 선정. 제294회 이달의 기자상,”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6067>(검색일: 2015. 5. 10.)

8) 양재규, 2015, “사생활 침해 · 명예훼손 · 도청’ 해당 안 돼,” 『신문과방송』 제532호, 25쪽.

‘성완중 게이트’에는 내로라하는 등장인물이 즐비하고, 논란거리도 많아 무엇이 뿌리고 걸가지인지 단단히 챙겨보지 않으면 본질이 실종되기 쉽다. 그 본질은 딱 하나, 권력형 부정비리다. 진상을 파헤치다보면 비자금, 뇌물, 분식 같은 경영비리 등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겠지만, MB 정부의 부패한 자원외교의 떡고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성완중과 그와 유착된 권력자들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핵심이다. 권력형 비리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소중한 국고를 얼마나 허비했는지를 밝히고 재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언론이 늘 주장하는 본연의 자세이자 공공성이다. 손석희를 단죄하는 핵심적 기준 또한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4월 23일자 『미디어오늘』 손석희를 위한 변명… 욕먹더라도 공개하는 게 맞았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JTBC 녹음파일 보도, 비윤리성이 명백해 보이는 ‘도용’이나 ‘가로채기’, ‘유족의 공개 반대’ 등과 같은 몇 마디 말로 단순화시킬 수 없는, 윤리적으로 꽤 복잡한 사안이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우리 언론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 독자나 시청자로 대변되는 사회에 대한 공적 책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위해 언론은 보도하는가? 취재원과의 신의 내지는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공적 이슈에 대한 보도를 지체하거나 유보하는 언론사는 과연 윤리적이라 할 수 있는가? 취재원이나 동료 집단에 대한 충성의무와 일반 독자나 시청자에 대한 충성의무가 상충할 때 기자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언론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언론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모든 법규를 잘 지키는 ‘착한 언론’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알려야 할 일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때로 부도덕한 행동까지도 감수할 수 있으며 취재원과의 대립을 불사하고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추적, 파헤칠 수도 있는, 어떤 면에선 ‘나쁜 언론’이 아닐까 싶다.